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76

발의연월일: 2024. 1. 9.

발 의 자:권영진·김상훈·이만희

김형동 • 우재준 • 김소희

이양수 · 김도읍 · 인요한

조승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.

그런데,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,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,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안정성 및 지방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

양 아파트(85제곱미터 이하)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2조제5호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중 "제외한다]"를 "제외한다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로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아니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포함한다]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이란	5
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	
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	
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	
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[아파	
트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의	
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	
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간매입	
임대주택은 <u>제외한다]</u> 을 말한	<u>제외한다. 다</u>
다.	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
	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아
	파트로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
	양되지 아니한 주거전용면적
	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간매
	입임대주택은 포함한다]
6. 삭 제	
7. ~ 15. (생 략)	7. ~ 15. (현행과 같음)